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조항(의료급여법 제11조의 5)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4.6.27.)에 따라 법원 무죄 판결시 급여비용 지급, 무죄 판결 확정 시 지급 보류 취소, 지급 보류기간 이자율 규정 등의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을 개정('25.4.22.공포, '25.7.1.시행)하였기에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지급 보류된 비용 지급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영 제13조의2 후단에 규정된 이자율 조항 삭제(안 제13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1조의5제3항”을 “법 제11조의5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1조의5제3항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1조의5제4항-----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지급 보류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	⑥ ----- ----- ----- ----- -----.
	-----. <후단 삭제>

<u>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u>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연 락 처	(044) 202 - 3906